

'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. 10. 4 ——— 사하구청장
 나. 회 부 일 자 : 1996. 10. 16
 다. 상 정 일 자 : 제5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 ('96. 10. 2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안병일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 (지출결정액 : 171,000원, 지출액 : 162,782천원)

- 비상급수시설 (3개소) ----- 46,000천원 - 40,342천원
 ○ 본관사무실 증축 ----- 30,000천원 - 29,600천원
 ○ 비상급수시설 (관정) 개발 ----- 60,000천원 - 57,840천원
 ○ 민사사건 가집행결정 보증공탁금 ----- 35,000천원 - 35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등 보다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
- '95년도의 예비비 사용 내용은 장기 가뭄으로 인하여 주민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비상급수 시설 4개소와 '95년도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무담당 부서 직제 확대 (세무과 → 세무과, 징수과) 및 인력증원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관 사무실을 증축 한 사항과 민사사건 가집행 결정 보증 공탁금 등 총 4 건 171,000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162,782천원을 지출한 사항으로서,

-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재정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재해발생등 부득이한 사안에 사용 등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 하여 합리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 의 요 지

- 이석래위원 : 비상급수시설 및 관정개발 설치 사업장 사업비 및 현황개요 규명
- 김 인위원 : 비상급수시설과 관정개발 사업장 차이점 규명
- 이수택위원 :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상 문제점 규명
- 이상은위원 : 개방 및 미개방 시설과의 관리상의 차이점 규명
· 전기료 등 관리상 유지비 지급 실태 규명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참 고 사 항 : 심사중 우리구 비상급수시설 18개소 내역 서면 제출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